



캘리포니아 직장 - 귀하의 권리를 알아보세요

캘리포니아 주 근로자로서 귀하는 직장 내 권리와 헌법상 권리를 알고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보건 및 안전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법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주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귀하의 권리 행사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해당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노동청,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청(Cal/OSHA), 민권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
- 고용주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 준수 여부를 문의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른 권리 행사를 돕는 행위.

불법 보복의 예로는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해고, 근무 시간 단축, 본인 또는 가족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민 신분과 관련된 직장 내 보호 조치

귀하의 이민 심사 통지 권리 (노동법 § 90.2)

고용주가 이민 당국의 I-9 고용 자격 확인서 또는 기타 고용 기록에 대한 예정된 검사 통지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통지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근로자 및 해당되는 경우 노조 대표에게 이를 알리는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이민 관련 관행으로부터의 보호 조치 (노동법 § § 1019-1019.2)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귀하가 권리를 행사할 때 고용주가 귀하에게 보복하거나 이민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다음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I-9 절차(신원 및 연방 근로 허가 증명) 과정에서, 진본으로 보이는 신분 증명 서류의 수락을 거부하는 행위”
- 법률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E-Verify (전자 고용 자격 확인 시스템)를 사용하는 행위.
 - 예를 들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원의 취업 자격을 재확인하기 위해 E-Verify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아닌 특정 근로자들만을 선별하여 심사하는 행위.
-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을 이민국에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경찰이나 주(州) 또는 연방 기관에 허위 보고를 접수하거나 접수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비상 연락처를 지정할 귀하의 권리 (노동법 § 1555)

귀하의 고용주는 **반드시** 귀하가 비상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귀하가 직장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해당 비상 연락처로 연락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직장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고 고용주가 이를 인지한 경우, 귀하가 해당 옵션을 선택했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귀하가 지정한 비상 연락처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직장 내에서 보호받는 활동에 참여할 귀하의 권리

캘리포니아의 대다수 근로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단체 교섭을 목적으로, 업무 관련 문제 및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들과 공동으로 행동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귀하가 임금, 근로 시간, 보건 및 안전, 기타 고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요청하거나 업무 관련 현안을 제기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노동조합 활동이나 보호받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또한 가집니다. 고용주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귀하의 노동조합 활동 또는 보호받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 귀하의 노동조합 지지 또는 보호받는 활동을 이유로 귀하를 위협하거나, 보복 또는 차별하는 행위.



직장에서 이민국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과 대면할 시 귀하의 권리

캘리포니아 근로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헌법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연방 이민국 요원 포함)이 접근할 때를 포함하여 특정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주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ICE(이민세관집행국)와 같은 연방 기관의 이민 단속 활동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 (미국 헌법 제4차 수정안)

- 이민국 요원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이 귀하 또는 귀하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색 허용 여부를 묻는 경우, 귀하 본인 또는 귀하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색을 구체적으로 허가하는 사법 영장이 없다면 귀하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수색을 실시하는 경우, 침착함을 유지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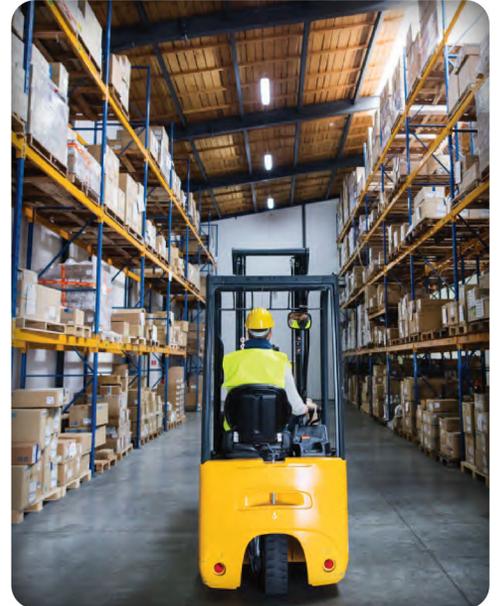
법 집행 기관은 영장 없이 공공장소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는 사업장의 로비, 대기실, 공용 식당 구역 또는 주차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법 집행 기관이 동의 없이 귀하의 사업장 내 비공개 구역에 진입하려면, 판사가 서명한 **사법 영장**, 이 있어야 합니다. 비공개 구역에는 휴게실, 직원용 화장실, 작업 공간 또는 '직원 전용'으로 표시된 모든 구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200 또는 I-205와 같은 행정 서식은 사법 영장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귀하의 고용주는 이민 단속 요원이 사업장의 비공개 구역에 진입하도록 자발적으로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법 영장이 없는 경우, 귀하의 고용주는 이민 단속 요원이 사업장의 비공개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DOJ)와 노동청(LCO)이 공동으로 발행한 **'이민 근로자 보호법 자주 묻는 질문(FAQ)** (<https://oag.ca.gov/system/files/media/ab450-faqs.pdf>)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한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 (미국헌법 수정 제4조)

- 귀하는 구금이나 체포를 포함하여 부당한 인신 구속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 법 집행 기관은 귀하를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수색하기 전, 반드시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는 “제가 구금된 건가요?”(Am I being detained?) 또는 “가도 됩니까?”(Am I free to leave?)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요원이 귀하가 구금된 상태가 아니며 가도 좋다고 말한다면, 귀하는 침착하게 현장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체포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 집행관이 해당 인물을 구금할 때 발생합니다.
- 법 집행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체포할 때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체포될 경우 변호사와 대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묵비권 (미국 헌법 제5차 수정안)

- 귀하가 법 집행 요원에게 말하는 모든 내용은 법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귀하의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한 뒤 **침묵을 유지하십시오.**
- 경찰관에게 허위 정보, 허위 신분증 또는 허위 서류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연방 범죄이며, 비시민권자에게는 심각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여 공공장소에서 법 집행 기관과의 상호작용을 기록할 권리

일반 대중은 수사관과 정부 단속요원이 공공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기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록하기로 선택했다면,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단속요원의 행동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방해나 언어적 도발은 귀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대리인에 대한 접근권

귀하가 체포될 경우, 귀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국선/공익 변호사)를 통해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또는 국경순찰대를 포함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체포된 경우, 귀하는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는 있으나 정부가 귀하에게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ICE 또는 CBP에 의해 체포된 경우, 귀하는 어떠한 말을 하거나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하의 모국 영사관과의 대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보상

귀하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귀하는 산재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혜택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복 기간 동안 손실된 임금의 일부를 지불하고, 귀하가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dir.ca.gov/dwc/ 를 방문하거나 1-800-736-7401로 전화하여 확인하십시오.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는 귀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목록입니다:

캘리포니아 산업관계부(California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DIR)):

캘리포니아 노동청(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

정보:
(833) LCO-INFO (833-526-4636)

이민 헬프라인:
(855) 526-7775

www.dir.ca.gov/dlse/

**캘리포니아 근로자보상국
(California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DWC))**

(800) 736-7401

dir.ca.gov/dwc/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국
(California Divi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al/OSHA))**

(833) 579-0927

<https://www.dir.ca.gov/dosh/>

기타 캘리포니아 주 기관(California State Agencies)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California Attorney General (AG))**

(800) 952-5225

www.oag.ca.gov

**캘리포니아 농업 근로자:
농업노동관계위원회
(Agricultural Labor Relations Board (ALRB))**

(800) 449-3699

www.alrb.ca.gov

**캘리포니아 민권부
(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 (CRD))**

(800) 884-1684

calcivilrights.ca.gov/

**캘리포니아 공공 부문 근로자 및 운송 네트워크 기업
운전기사:
공공고용관계위원회
(Public Employment Relations Board (PERB))**

(916) 322-3198

perb.ca.gov

연방 정부 기관:

**민간 부문 근로자: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844) 762-6572

www.nlr.gov

**연방 기관 근로자:
미국연방노사관계청(U.S.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FLRA)):**

(771) 444-5801

<https://www.flra.gov/>

**철도 및 항공사 근로자
전국중재위원회(National Mediation Board (NMB)):**

(202) 692-5000

https://nmb.gov/NMB_Application/

비정부 기구 (NGO)입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 비영리 법률 단체나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이해를 돕기 위해 주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단체 목록을 보려면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dir.ca.gov/dlse/Nonprofit-Legal-and-Community-Based-Organizations-Serving-Workers.html 에 방문하세요.

